



보도자료

2015년 10월 8일(목) 배포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문의 :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김용일 과장 (☎2110-1510)
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심아미 사무관(☎2110-1513)

제공일: 2015.10.8.(목)

방통위, 결합판매 허위·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

- 허위·과장 광고의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2015년 8. 6일 발표한 「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(안)」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「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·과장 광고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다.

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·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
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·과장·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.

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'공짜', '무료' 등으로 광고,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'최대', '최고', '제일'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,

과장광고는 기간·다량·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,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,

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,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,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.

또한,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·과장·기만광고의 유형,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·확인토록 하였다.

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

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·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붙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·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. 끝.

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·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□ 허위·과장·기만광고 유형별 금지행위

-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·광고하는 것이다.
- 과장광고는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·광고하는 것이다.
- 기만광고는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·누락·축소하여 표시·광고하는 것이다.

※ 허위·과장·기만광고의 유형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고사례가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

1. 허위 광고

가.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‘최대’, ‘최고’, ‘제일’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- ‘업계 최대 경품(현금) 지급’, ‘대한민국 최저 가격’, ‘대한민국에서 현금 제일 빨리 많이 주는 곳’ 등 실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
⇒ ‘최고’, ‘제일’ 등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 표시 삭제

나.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‘공짜’, ‘무료’ 및 ‘0원’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- 결합상품의 총 할인액을 특정 구성 상품에 집중시켜 ‘인터넷 공짜(20,000원 할인)’, ‘방송 무료’, ‘인터넷 무료수준’, ‘방송 무료혜택’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
⇒ 인터넷 3,400원, 이동전화 16,600원 할인 등으로 구성상품의 할인액을 표시

다.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'기존 통신사 위약금 100% 해결' 등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
- ⇒ 위약금 8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등으로 표시

2. 과장 광고

가. 기간·다량·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약정기간·다량·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'최대 136만원 혜택'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
- ⇒ 인터넷·IPTV·이동전화(3회선) 결합 및 3년 약정시 3년약정 요금할인 68만원, 결합요금할인 68만원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

나.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모든 가입자에게 '인터넷+IPTV+인터넷전화 84만원'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
- ⇒ 인터넷, IPTV, 인터넷전화 결합시 약정기간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84만원 혜택 등으로 표시

다.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이용약관에 따라 매월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전체 약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액으로 환산하고 경품 금액과 합하여 '사은품 92만원'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
- ⇒ 3년 약정시 요금할인(약정할인 36만원, 결합할인 36만원), 경품(상품권 10만원, 현금 10만원)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

3. 기만 광고

가.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,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,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약정기간, 제휴카드 사용,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이동전화 회선수 또는 요금제, 위약금 등 주요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'최대 150만원 혜택'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

⇒ 약정기간 3년, 인터넷·이동전화(62요금제) 3회선 결합 및 제휴카드 사용(전월 실적 30만원 이상)시 최대 150만원 혜택 등으로 주요 이용조건 표시

-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'TV 40인치 제공'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

⇒ LED TV 40인치 제공(고객부담금 15만원) 등으로 표시

나. '가'에 따른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

<예시>

- 주요 할인 및 경품 지급 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

⇒ 중요정보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기재하거나 글자의 굵기, 밑줄, 색깔 등을 다른 광고문구와 다르게 표시하여 이용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표시

□ 자율 조치

- 사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·과장·기만광고의 유형,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준수하도록 한다.
- 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·오프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·확인하되,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의 광고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한다.